

『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소방·안전시설 확충 지원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('15. 1. 1)·배분됨에 따라, 안전분야 예산의 안정적 확보·집행을 위해서는 「재난안전 특별회계」 설치·운용 필요
-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분야 예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「재난안전 특별회계」를 설치하고 재난안전 예방·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

(안 제1조~제2조)

- 소방안전교부세(안전분야),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규정함 (안 제3조)
-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 및 재량사업,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등을 세출용도로 규정함 (안 제4조)
-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~제6조)
-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을 규정함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 및 「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중점사업 : 중요하고 시급한 안전시설의 확충, 안전관리 강화 사업
2. 재량사업 : 일반적인 안전시설의 확충, 안전관리 강화 사업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소방안전교부세(안전분야)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「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 및 재량사업
2.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
3. 재난관리기금 전출
4.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예비비) 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<u>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</u>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<u>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<u>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</u>
------	--

관계법령	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(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)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교부한다. 이 경우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·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방분야: 소방시설(소방장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. 안전분야: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. 1.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: 100분의 40 2.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: 100분의 40 3. 재정여건: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.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, 교부방법,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부칙 <대통령령 제26328호, 2015.6.22.> 제2조(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) 시·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<u>2017년까지는</u>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<u>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</u>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<u>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</u>
------	--

관계법령	☐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[시행 2015.7.3.] [총리령 제1175호, 2015.7.3., 제정] 제8조(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)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,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. 1. 중점사업 :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(소방장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안전시설의 확충,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. 재량사업 :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,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·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